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5. 16 선고 2023나10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5. 16 선고 2023나1041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합1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5. 16.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가합1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과 C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대 467.9㎡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B과 C 사이에 같은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2019.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0. 4. 접수 제150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합계 475,579,24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순번	관할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채납액(원)
1	전주	양도소득세	2017년	2017. 8. 31.	2019. 12. 31.	389,476,650	468,345,550
2	전주	종합부동산세	2018년	2018. 6. 1.	2019. 1. 31.	846,970	872,370
3	전주	종합부동산세	2019년	2019. 6. 1.	2019. 12. 31.	1,812,880	2,127,850
4	성동	종합부동산세	2017년	2017. 6. 1.	2108. 2. 20.	3,139,060	4,233,470
합 계						395,275,560	475,579,240

나. C은 2019. 10. 4. 용인시 기흥구 D 대 4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 지분에 대하여 아들인 피고 A과, 위 부동산 중 4/5 지분에 대하여 며느리인 피고 B과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0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유일한 재산(그 외에는 약 1,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의 예금채권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성립한 것으로(위 <표>기재 조세채권 중 순번 1, 3번의 경우 납부기한은 그 이후이지만, 납세의무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73,438,7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용인시에 의한 압류 외에도 근저당권자 E, F조합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원고의 조세채권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선의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C의 아들과 며느리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철, 판사 김경선, 판사 기회광